

자가격리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안내문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응시 자체를 권고드리며, 부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대상)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접수한 수험자 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해당 시험기간에 자가격리대상인 자

※ 단, 연 1회 시행하는 전문자격(작업형) 시험 수험자는 해당 자격 담당자에게 아래 신청기한 내 신청 시 응시기회 보장을 위한 별도조치 검토 예정

- ❖ (시험응시 신청기한) 시험시행일 2일 전 18:00까지(주말 제외)*

* 신청기한이 주말인 경우, 응시가능여부는 평일에 별도 확인 요망

- ❖ (제출서류) ①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②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③ 방역당국 외출허가증(관할 보건소로부터 발급)

- ❖ (제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신청의사(유선 가능)를 알리고, 공단대표 메일로 제출서류 송부(제출서류 ③은 시험당일 제출 가능)

☞ 자가격리자 응시 신청 연락처 및 메일 주소

◆ 공인노무사 : ☎ 052-714-8385, ✉ exam@hrdkorea.or.kr

- ❖ (시험응시 방법)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응시
- ❖ (안내)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 응시통보는 개별 안내(유선, 문자 등)
- ❖ (응시 신청자 격리해제 사실 통보 의무) 신청자 중 격리해제 후 작업형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자는 해제 사실 즉시 공단에 통보

2021년 1월 28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확진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안내문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자체를 권고드리며, 부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대상) 공단에서 연 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접수하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병원·생활치료센터)중에 있는 수험자
 -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확진자 시험응시 제한

- ❖ (시험응시 신청기한) 시험시행일 3일 전 18:00까지(주말 제외)*

* 신청기한이 주말인 경우, 응시가능여부는 평일에 별도 확인 요망

- ❖ (평가방법별 조치사항)

구분	필기시험 (필기, 필답형 실기, 면접)	실기시험 (작업형)
대상 종목	◆ 연 1회 시행종목	
대상자	◆ 확진자 중 신청자	◆ 시험기간 중 완치 판정을 받은 자 (신청 시 확진자에 한함)
조치 사항	◆ 입원 중인 병원·생활치료 센터에서 시험응시	◆ 응시기회 보장 ① 필기면제만료자는 면제기간 연장 조치 ② 시험기간 내 시험일·시험장소 변경 조치(일정 가능 시) ③ 시험기간 내 시험일·시험장소 변경 불가 시, 응시 불가하나, 면제기간 연장 조치 검토
시험 응시일	◆ 해당종목 시험일	◆ (시험일·시험장소 변경) 격리해제 후 해당 회차 시험기간 내 가능일자
제출 서류	①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② 주치의 확인 및 시설사용 허가서	①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신청 방법	◆ 공단에 시험응시 희망의사 고지(유선) ◆ 공단대표 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안내	◆ 시험시행일 전 개별 안내(유선, 문자 등)	
비고	-	◆ 신청자 중 격리해제 후 작업형 실기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자는 해제 사실 즉시 공단에 통보 ◆ 전문자격시험은 관계법령 및 소관부처 의견에 따라 변동 가능

☞ 확진자 응시 신청 연락처 및 메일 주소

◆ 공인노무사 : ☎ 052-714-8385, ✉ exam@hrdkorea.or.kr

❖ **연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필기, 필답형, 실기, 면접)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할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상기 시험응시 신청기한, 제출서류·방법 준수
- 단, 확진자 건강상태 및 지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 할 수 있음

시도별 시험 응시 가능 생활치료센터 목록 (2021. 01. 22. 기준)

※ 아래 응시 가능 센터는 '21. 01. 22. 기준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험일 전 각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응시센터 확인 후 시험 실시 필요

지역	생활치료센터
서울	(남산)서울유스호스텔
부산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대구	전담병원 격리병상(동산병원)
인천	인천하나글로벌캠퍼스
광주	광주소방학교생활관
대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울산	현대자동차인재개발원(~1.31.)
세종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경기	SK 인재개발원
강원	강원도 인재개발원
충북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전북	전담병원 격리병상(군산의료원)
전남	한전 KPS 인재개발원
경북	안동인문정신연수원
경남	경남 KB손해보험연수원
제주	전담병원 격리병상(제주대학교병원)

2021년 1월 28일

HIRDK 한국산업인력공단

붙임 1

시험응시 신청(접수)서

국가전문자격시험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신청(접수)서

☐ 수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이메일	

☐ 접수한 시험정보

접수한 시험 정보				
필·실기 구분	회차	등급 및 종목	시험일	시험장소

작성방법 및 안내사항

- ❖ (대상)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필기, 면접)에 접수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수험자
 - ※ 단, 연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작업형 시험 수험자는 공단 담당자에게 신청 시 응시기회 보장을 위한 별도 조치 가능
- ❖ (시험응시 신청기간) 시험시행일 2일 전 18:00까지(신청기간 내에 공단 담당자에게 시험응시 희망의사 고지 후 시험장 준비가 가능하므로 신청기간 경과 시 시험응시 불가)
- ❖ (제출서류) ❶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❷ 자가격리 통지서 사본 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관할 보건소로부터 발급)
- ❖ (제출방법) 시험 담당자에게 시험응시 신청의사(유선)를 알리고, 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 ※ 시험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주소

◆ 공인노무사 : ☎ 052-714-8385, ✉ exam@hrdkorea.or.kr

- ❖ (시험응시 방법)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
- ❖ (안내) 시험시행일 전 개별 안내(유선, 문자 등)
- ❖ (시험응시 신청자 격리해제 사실 통보 의무) 격리해제 후 작업형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자는 해제 사실 즉시 공단에 신고

유의사항

- ❖ 시험응시 가능 자가격리자 대상이 아닐 경우, 관련 조치 불가
- ❖ 신청기한 미 준수 시 시험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응시 불가
- ❖ 시험응시 신청 후 자가격리자 건강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 불가할 수 있음
- ❖ 자가격리자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본인은 상기와 같이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자가격리자 시험응시를 신청하며,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조치가 불가할 경우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노무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자가격리자 시험응시를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건강정보에 관한 사항	공인노무사 시험 자가격리자 시험응시를 위한 개인정보 확인	<u>해당되는 시험의 종료시부터 1년간</u>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기타 고지사항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공인노무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9조

공단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당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수험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 년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국가전문자격시험 확진자 시험응시 신청(접수)서

☐ 수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이메일	

☐ 접수한 시험정보

접수한 시험 정보				
필·실기 구분	회차	등급 및 종목	시험일	시험장소

작성방법 및 안내사항

- ❖ (대상)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필기, 면접) 중 연 1회 시행하는 시험에 접수하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병원·생활치료센터)중에 있는 수험자
 - ☞ 연2회 이상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헌법재판소 취지 및 시험·방역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대로 확진자 응시제한
 - ※ 단, 연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작업형 시험 수험자는 공단 담당자에게 신청 시 응시기회 보장을 위한 별도 조치 가능
- ❖ (시험응시 신청기간) 시험시행일 3일 전 18:00까지(신청기간 내에 공단 담당자에게 시험응시 희망의사 고지 후 시험장 준비가 가능하므로 신청기간 경과 시 시험응시 불가)
- ❖ (제출서류) ❶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❷ 주치의 확인 및 시설사용 허가서
- ❖ (제출방법) 시험 담당자에게 시험응시 신청의사(유선)를 알리고, 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 ※ 시험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주소

◆ 공인노무사 : ☎ 052-714-8385, ✉ exam@hrdkorea.or.kr

- ❖ (시험응시 방법) 입원중인 병원·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시험응시
- ❖ (안내) 시험시행일 전 개별 안내(유선, 문자 등)
- ❖ (시험응시 신청자 격리해제 사실 통보 의무) 격리해제 후 작업형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자는 해제 사실 즉시 공단에 신고

유의사항

- ❖ 시험응시 가능 확진자 대상이 아닐 경우, 관련 조치 불가
- ❖ 신청기한 미 준수 시 시험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응시 불가
- ❖ 시험응시 신청 후 확진자 건강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 불가할 수 있음
- ❖ 확진자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본인은 상기와 같이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확진자 시험응시를 신청하며,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조치가 불가할 경우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5

시설사용 허가 확인서

확진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시설사용 허가 확인서

☐ 수험자 시험정보

성명		생년월일	
시험명	제 회 공인노무사 제 차 시험		시험일

☐ 수험자 시험응시 여부 관련 주치의 확인사항

수험자의 시험응시 가능여부	가능(), 불가()	사유(불가 시)	
		주치의(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설사용 허가 관련 병원 관계자 확인사항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위해 다음 시험프로세스별 병원측 협조사항을 참고하시어 외부시험위원의 확진자 입원실 입실 및 해당 입원실의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한 시설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시험위원 입실	가능(), 불가()	사유(불가 시)	
시설사용 가능여부	가능(), 불가()	사유(불가 시)	
담당자 연락처	☎		

❖ 시험프로세스별 병원 협조사항

구분	주요내용	병원 협조사항
시험위원 입실	◆ 공단에서 위촉된 시험위원이 확진자 입원실 방문	◆ 해당 기관(시설) 의료진에 준하여 시험위원 방역조치 실시
수험자 시험준비	◆ 시험에 응시하는 확진자의 좌석 정리 등 시험시행을 위한 준비	◆ 응급조치사항 발생 대비
수험자 교육	◆ 시험위원이 매뉴얼에 따라 수험자 교육 실시	◆ 응급조치사항 발생 대비
문제지 지급	◆ 병원 관계자가 문제지, 답안카드(지) 등을 지급하도록 조치	◆ 가급적 주치의 또는 담당 의료진 등이 직접 전달
시험 시행	◆ 수험자는 시험 시행 ◆ 시험위원은 부정행위 감시	◆ 응급조치사항 발생 대비
문제지 회수	◆ 시험 종료 선언 후 병원 관계자가 답안 카드(지) 또는 문제지를 회수하도록 조치 (자격별 상이함)	◆ 확진자와 접촉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치의 등이 회수하여 시험위원에게 전달
시험종료	◆ 시험위원은 소속기관으로 복귀	◆ 확진자 건강 관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확진자 시험응시에 대한 주치의 확인사항과 시설사용 허가 관련 확인사항에 대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